

|       |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|
| 의안번호  | 2212014    |
| 의 퇴 인 | 이광희의원      |
| 회 답 일 | 2025.9.12. |
| 추계번호  | 25D4257    |

#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## I. 재정수반요인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요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  | 안 제10조의2<br>(특수경비원의<br>당연 퇴직) 및 안<br>제25조제3항(보<br>안지도·점검 등) | 특수경비원의 당연 퇴직 규정을 삭제하고, 공공기관이 국가중요시설의 물리적<br>방호 업무를 특수경비업체에게 위탁할 경우, 「근로기준법」 과 「국가를 당사자로<br>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, 통계청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등을 고려하여 원가를 산<br>정하도록 규정 |
| 2  | 안 제25조제2<br>항(보안지도·점<br>검 등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시·도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경비업자에 대하여 특수<br>경비원의 보수 수준, 지급실태, 근로조건 등 처우에 관한 지도·점검을 실시하여<br>야 하고,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특수경비원의 처우에 관한 실태조사를 요청할<br>수 있음    |

## 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### 1. 근거 규정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미첨부 근거 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  | 안 제10조의2<br>(특수경비원의<br>당연 퇴직) 및 안<br>제25조제3항(보<br>안지도·점검 등) |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<br>어려운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  | 안 제25조제2<br>항(보안지도·점<br>검 등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미대상: 시·도경찰청이 특수경비원 보수 수준 등의 자료를 해당 업체에 직접 요<br>청하여 실태를 조사할 수 있으므로 추가재정소요는 없을 것으로 예상 |

## 2. 상세 사유

### □ 특수경비원 당연 퇴직 폐지 및 처우 개선(안 제10조의2 및 안 제25조제3항)

- 개정안에 따라 특수경비원의 당연 퇴직을 폐지하는 경우 현재 60세의 정년이 연장되는 효과로 인건비 등에서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되고, 공공기관이 방호업무 위탁 시 관계 법령 등을 고려하여 원가를 산정하는 경우 특수경비원의 처우가 개선되는 효과로 공공기관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매년 받는 기관이 포함되어 있음)이 특수경비업자에게 지급하는 위탁비용 등에서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
  - 특수경비원은 공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<sup>1)</sup>의 경비 및 도난·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함
  - 현행법은 특수경비원이 60세가 되어 퇴직하는 경우 상반기에는 6월 30일, 하반기 정년 시에는 12월 31일에 퇴직하도록 규정
  - 개정안에 따라 특수경비원이 60세에 당연 퇴직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는 경우, 신규 입사자 수가 감소하며 60세 이상의 재직자와 신규 입사자의 보수, 수당 등의 차이만큼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
  - 현행법은 특수경비업무 위탁 시 원가, 비용 등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, 일반적으로 특수경비업무 위탁비용은 경비업무의 종류, 투입된 인원, 필수 장비 등에 따라 결정
- 다만, 특수경비원의 소속된 회사에 따라 보수체계가 다르고 재직자 및 신규 입사자의 인건비(보수, 수당 등) 차이, 연장되는 재직기간, 위탁하는 경비 업무의 종류와 해당 업무별 원가의 평균 인상분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 곤란
  - 참고로, 공공데이터포털의 경비업체 현황(경찰청 작성)에 따르면 경비업체는 시설 경비, 호송경비, 신변보호, 기계경비, 특수경비, 혼잡교통 등으로 구분하며 2025년 7월 기준 총 9,838개가 있고 이 중 특수경비업체는 123개

1) 공항·항만, 원자력발전소 등의 시설 중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국가보안목표시설과 「통합방위법」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을 말함

### 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### Ⅳ. 작성자

☐ 성명

|         |     |     |
|---------|-----|-----|
| 국회예산정책처 | 분석관 | 과장  |
| 행정비용추계과 | 이미연 | 김안나 |

☐ 대표연락처

|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성명  | 전화번호         | 이메일 주소           |
| 이미연 | 02-6788-4661 | mylee@nabo.go.kr |